

예산총칙

2013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161,102,079	34,833,062
일반회계	1,108,105,403	33,243,162
특별회계	52,996,676	1,589,900
기타특별회계	52,996,676	1,589,900
주택사업특별회계	80,000	2,400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7,295,294	218,859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704,000	21,120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5,201,010	756,030
교통사업특별회계	14,439,228	433,177
대지보상특별회계	905,349	27,160
기반시설특별회계	67,477	2,024
수질개선특별회계	4,304,318	129,130

제 2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계속비사업은 별첨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는 『8,667,641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액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